

한-중 사회보험협정에 의한 중국 양로보험료 면제 신청 안내

한-중 사회보험협정이 2013년 1월에 발효되어 중국에서 소득활동 하는 우리 국민은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, 중국 양로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
□ 중국 양로보험료 면제 대상

구 분	면 제 요 건
한국→중국 파견 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파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: 중국 양로보험료 면제 ○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 국민연금공단과 중국 사회보험관리중심간 합의에 따라 중국 양로보험료 면제 연장 가능
중국 현지 채용 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용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: 중국 양로보험료 면제 ○ 고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초 5년간 중국 보험료 면제 ⇒ 동일 사업장 고용기간이 5년 초과 시 중국 보험료 납부 대상 ⇒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 5년간 중국 보험료 새롭게 면제 가능

중국 양로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『한-중 사회보험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』를 발급받아 중국 사회보험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□ 한-중 사회보험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

- (신청방법)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로 제출(EDI, FAX 02-3485-9807, 우편)
- (구비서류) 한-중 사회보험협정에 의한 가입증명 발급신청서 1부
(다운로드 경로: www.nps.or.kr > 연금정보 > 자료실 > '중국' 검색)
 - 파견근로자의 경우: 파견 증빙자료, 고용보험 가입확인서류
 - 현지채용자의 경우: 고용계약서
- (문의처) T. 02-2176-8733,8727, 홈페이지*
* www.nps.or.kr > 연금정보 > 사회보장협정 > 협정체결국>중국(개정협정)

*파견기간이 연장되었거나, 현지 채용 사업장이 바뀐 경우 가입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